#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74

발의연월일: 2020. 12. 31.

발 의 자:이개호·윤재갑·이상직

유동수 · 홍성국 · 서삼석

위성곤 • 이워택 • 김민철

김승남 · 송갑석 · 김병기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논 타작물재배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특용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벼를 재배하던 논(畓)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필요시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田)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함.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개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정비 또는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로 정비하고, 토양개량, 농로정비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호의2다목 신설).

아울러, 「국가회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을 '기업회계'에서 '국가회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

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 한 농지정보, 재산 및 과세 관련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음.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 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

#### 법률 제 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지범용화(논과 밭을 번갈아가며 쓸 수 있도록 용수·배수시설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가 필요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제35조제3항 중 "기업회계의 원칙"을 "「국가회계법」"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	
용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	5의2
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	
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가. • 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다. 농지범용화(논과 밭을 번갈
	아가며 쓸 수 있도록 용수
	•배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가 필요한 농지 및
	<u>농업기반시설</u>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u>기업회계의 원칙</u> 에 따	③ 「국가회계법」
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u>공사</u>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u>①</u> <u>공</u>
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농업인에	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

현 행

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신 설>

수 있다.

<신 설>

#### 개 정 안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 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 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

현 행	개 정 안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
	<u>청을 따라야 한다.</u>
<u>&lt;신 설&gt;</u>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
	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
	제한다.